

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[별표 3] <개정 2026. 1. 1>

출석인정일수

(제34조제2항제2호 관련)

구 분	사 유	출석인정일수
훈련·시험, 공민권 등	- 예비군·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-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-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- 취·창업을 위하여 훈련과정의 직종과 관련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「숙련기술장려법」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경우 -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	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
결 혼	· 본인	5일
	· 자녀	1일
사 망	- 배우자 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
	-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-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	3일
	·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일
	·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3일
출 산	· 배우자	5일
질병·입원	· 본인 및 자녀(만19세 미만). 다만 출석인정일수는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(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)를 초과할 수 없다.	소요일수
휴 가	- 주평균 소정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 과정 중에서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- 다만, 훈련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체 소정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이고 전체 훈련기간이 월력 상 5개월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훈련기간을 6개월로 보고 월 1일(최대 6일)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- 훈련생의 필요에 따라 월 1회의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. -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.	월 1일

*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(훈련·시험, 결혼, 사망, 출산, 휴가)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,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(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)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
*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‘사유발생일’을 기준으로 한다.